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7일, 이철구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진엽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본 방향, 인력양성 및 공급 등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과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기업 등의 유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 (안 제10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을 경상북도가 주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이차전지”, “이차전지산업” 용어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상위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차전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울산, 충북, 전북에서도 “이차전지산업”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울산	전북	충북	경북(안)
조례명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이차전지산업)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 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	이차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소재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 양극재 -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 얇은 알루미늄 기재와 활물질·도전재·바인더로 구성,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

** 음극재 - 배터리 충전속도와 수명을 결정, 흑연이 주 소재이며 대안으로 실리콘이 연구대상

*** 전해액 - 물 등의 용매에 녹아 용액이 전기전도성을 지녀 전류를 통하면 전기분해 현상을 일으킴

**** 분리막 - 물질의 성질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서 물질의 분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막

- **안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
- **안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내용을 규정함
- **안 제8조(예산지원)**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노력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다만 기업 등의 유치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조항은 선언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실제 기업 등의 유치지원 시에는 위에서 인용한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임
- **안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기능 수행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기반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됨
- 이와 관련,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이차전지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내 거점별 강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개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포항)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및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 (경주·영천) 내연기관에서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소재부품산업 전환 추진
 - (경산) 무선충전 규제특구기반 차세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허브 구축
 - (구미)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구축
 - (김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특구기반 3륜 전기자전거 등 이차전지 활용거점 육성
- 이차전지의 4대 핵심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전구체)로 이차전지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서는 경북만의 강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북(포항)은 양극재/음극재 생산 공장과 리사이클링/전구체 공장을 보유한 유일한 지자체로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최적지임. 또 전북(새만금), 충북(청주), 울산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해 최대의 시너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차전지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등 자국 중심의 이차전지 생산 내재화로 국가간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 이에 대응한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본 조례안은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행정기관 주도의 육성대책으로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운영 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